제3장
추후보도 사례

제3장 추후보도 사례

사례12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 건	2016서울조정288·289, 2016서울조정290·291(병합) 각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박○○ 외 3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인터넷 채널A)
중 재 부	서울 제5중재부
접 수 일	2016. 3. 3.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추후보도,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한 영어유치원에서 교사들이 불 꺼진 방에서 아이들에게 도깨비와 통화하라며 위협했고, CCTV의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가 있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초상이 들어있는 CCTV 영상을 사용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보도 및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이 사건 보도 당시 피의사실에 불과한 신청인들의 혐의를 상당히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고, 학부모들의 피해 진술에 반해 신청인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후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권유, 당사자 간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협의 및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 유치원 교사, 도깨비 방서 구타" 주장 나와』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6일자, 인터넷 채널A 1월 16일자 뉴스면) 외 4건**

■ 내 용

▷ 앵 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도 바로 옆 ○○에서 영어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를 때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CTV의 사각 지대에 벌어진 폭행이었습니다.
CCTV가 있는 곳에서도 버젓이 체벌이 자행됐습니다.

▷ 기 자 : 유치원 교사가 불이 꺼진 방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아이에게 들이댑니다.
두 사람이 CCTV의 사각지대로 사라진 뒤 신체 일부가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교사와 아이의 실랑이는 계속됩니다.
당시 5살이던 이 아이는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이 도깨비 방에서 도깨비와 통화하라"며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사각지대에서 "선생님이 자신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 목격한 유치원생 : "말 안들어서 때리는 거에요."
(어디를 때렸는데?) "엉덩이"
(또 어디 했는데?) "머리, 이마"

▷ 기 자 :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벽을 보고 선 채 손을 들고 체벌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도 여러 개 확인됐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 2명과 관리자 1명을 고소했습니다.

▷ 피해 아동 부모 : "너무 무섭다고 도깨비가 나올 것 같다고 막 우는거에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몸을 이렇게 때린다는 거에요."

▷ 기 자 :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벌 세운 것은 맞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유치원 교사 : "선생님이 토닥토닥해준 건데, 엄마가 맞았냐고 물어보면 5세 아이들은 '아, 그럼 때렸네'라고 생각해서 …."

▷ 기 자 : 경찰은 해당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추후보도문을 〈채널A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종합뉴스(http://news.ichannela.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들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가. 제목 : "경기 ○○ 영어 유치원 도깨비방 아동학대 사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처분)"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월 16일, 22일, 24일 〈종합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 유치원 교사, 도깨비 방서 구타"라는 등의 제목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지청 수사결과, 위 사건과 관련된 교사들 모두 2015년 11월 3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원(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경기 ○○ 영어유치원, '도깨비방' 아동학대 무혐의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월 16일 「아동 학대 유치원 '도깨비방'의 실체는?」 등 관련 보도에서 경기 ○○의 영어유치원 교사들이 불 꺼진 '도깨비방'에서 원생들을 체벌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교사들은 모두 2015년 11월 30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6년 3월 30일 10:00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 채널A〉 초기화면 주요 뉴스목록 하단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조정대상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며, 피신청인의 기사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6년 4월 5일까지 금 850만 원(신청인 박○○ 150만 원, 신청인 최△△·박□□ 각 200만 원, 신청인 송◇◇ 3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3.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채널A – 『경기 ○○ 영어유치원, '도깨비방' 아동학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초기화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13

모 지자체 공무원인 신청인이 산림훼손과 불법 채석을 묵인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 건	2016서울조정2153·2154, 2016서울조정2155·2156, 2016서울조정2219·2220(병합) 각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이○○
피 신 청 인	1. 한국방송공사 2.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KBS-1TV, 경인KBS-1TV, KBS미디어)
중 재 부	서울 제6중재부
접 수 일	2016. 12. 21.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추후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현무암을 불법으로 채취해 조경용 석재로 팔아넘긴 일당이 체포됐고,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에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들은 추후보도 방송 및 인터넷 게재를 수용할 수 있으나, 보도 당시 경찰서의 보도자료 및 추가적인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하였던 바,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해 추후보도를 보도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아울러 신청인은 KBS 외에도 신청인의 혐의사실을 보도한 47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추후보도를 청구했으며, 언론사들이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심리 전 추후보도문을 게재하여 취하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신청과 동일하게 모두 피해구제되어 종결되었다.

조정대상보도 1

■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현무암 불법 채취 … 단속 공무원은 '뒷짐'』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6일자) 외 4건

경인KBS-1TV – 뉴스9 프로그램『버섯 대신 현무암』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6일자)

■ 내 용

▷ 앵 커 : 버섯 키운다고 허가 받은 땅에서, 현무암 수억 원어치를 무단으로 캐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줬습니다.

▷ 기 자 : 거대한 바윗덩어리 사이에서 굴착기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25톤 트럭도 동원됐습니다.
조경용으로 인기가 좋은 현무암을 몰래 캐내는 현장입니다.
홍 모 씨 등이 버섯을 키우고 야영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내다 팔 석재를 채취한 겁니다.

▷ 현무암 채취 목격 주민(음성변조) : "개울 바닥하고 벽(산허리), 굴착기가 닿을 수 있는 곳은 긁어 내려서 다 채취해 간 거예요.(양이 많았나요?) 아 많았죠."

▷ 기 자 : 화산 용암이 굳어 생긴 절경, 주상절리로 유명한 지역까지 여기저기 흉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이런 불법 채취는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주민들이 세 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둘러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불법 채취 피의자/음성변조) : "이 동네가 현무암층이라 땅을 파면 현무암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러오면 그냥 판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 기 자 : 홍 씨 등이 캐낸 현무암은 6천 톤, 시가로 10억 원어치를 넘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 현장으로 팔려 나가 조경석으로 쓰였습니다.

▷ 김○○(○○경찰서 ○○팀장) : "현무암이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멋있기 때문에 별장이나 이런 곳에 조경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 기 자 : 경찰은 홍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정대상보도 2

■ KBS미디어 –『조경용 현무암 6천 톤 불법 채석 일당·묵인 공무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 내　　용

조경용 석재로 인기 있는 현무암을 대량으로 불법 채석해 팔아치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경찰서는 현무암을 불법으로 캐내 조경용 석재로 팔아넘긴 혐의로 홍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산지 훼손을 묵인해 준 혐의 등으로 ○○군 공무원 이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 했습니다.

홍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군 ○○읍 ○○리 야산에서 현무암 6천 톤, 시가 6억 원 어치를 허가 없이 캐내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홍 씨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지만, ○○군 공무원 이 씨 등이 이를 묵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불법채취된 현무암은 전국 각지의 조경업자에게 넘어가 SH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 1은 아래 추후보도문을 KBS-TV 〈뉴스12〉외 4개 프로그램 및 경인KBS-1TV 〈뉴스9〉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 2는 KBS뉴스(http://news.kb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가. 제목 : "현무암 6,000톤 불법 채취 … 공무원이 묵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 11. 6.(뉴스 12)외 5개 프로그램에서 "현무암 6,000톤 불법채취 … 공무원이 뒷짐" 이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산림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세 차례나 신고했지만 공무원 이 씨 등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군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현무암 불법채취를 묵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1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군청 공무원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7년 1월 11일까지 KBS-1TV 〈뉴스7〉 및 경인KBS-1TV 〈뉴스9〉 프로그램에서 보도하되,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7년 1월 11일까지 KBS NEWS 홈페이지(http://news.kbs.co.kr)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신청인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는 2017년 1월 11일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제3항의 사항을 전송한다.

5. 피신청인들이 제2항~제4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제2항~제4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의 각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들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 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KBS-1TV – 뉴스7 프로그램 및 경인KBS-1TV – 뉴스9 프로그램『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제하의 각 보도 (2017년 1월 6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